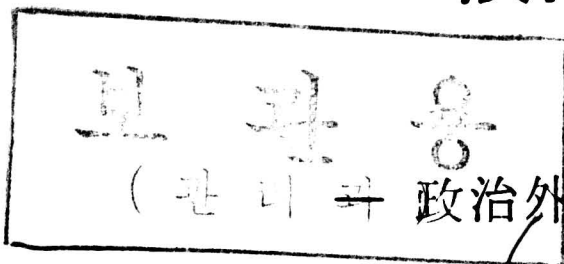


南北調節委員會 政治分科 委員會의

設置展望과 問題点



政治外交分野의 對話戰略 問答 一

1973. 12.

國土統一院

## 목 차

1 . 문제의 제기 .....	2
2 . 북한측이 남북대화에 응한 동기.....	3
3 . 남북조절위원회의 성격과 기능.....	5
4 . 정치분과 위원회의 설치.....	12
5 . 정치분과 위원회 설치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23

## 1. 문제의 제기

- 가. 북한측은 1973.8.28. 김영주 성명에서 이후락 서울측 공동위원장의 교체등을 요구, 남북대화를 일방적으로 중단
- 나. 북한측은 7.4 남북공동성명 이후 1년여의 남북대화 경험과 국내외 정세를 토대로 남북대화의 전략적 가치를 평가 남북대화의 재개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
- 다. 따라서 현시점에서는 정치외교분야의 대화전략 문답집을 작성하는 사업보다 남북조절위의 재개전망(특히 정치분과 위원회의 설치전망 및 문제점)을 검토함이 급선무.

## 2. 북한측이 남북대화에 응한 동기

- 남북대화에 응한 북한측 기본동기의 분석으로 대화재개의 가능성 검토

기본동기	비 고
<p>가. 전쟁의 방지 (체제유지)</p>	<p>(1) 북한은 일면으로 대남혁명을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면으로는 한국의 군사적위협을 의식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히 5.16 혁명 이래 한국에 강력한 반공정부가 수립되고 「쿠바. 사태」에서 소련의 대미양보가 현실화되자 「4대군사노선」등 이른바 「국방에 있어서 자위」를 기도하고 있음.</li> <li>○ 한국의 강력한 방비체제와 한.미 공동 방위체제의 존재로 대남전쟁에 승산을 갖지 못하고 있음.</li> </ul> <p>(2) 북한은 파국에 직면한 경제발전의 정상화를 위하여 전쟁방지를 기도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일성은 1970.11. 노동당 제5차대회에서 군사비부담의 과중고백.</li> </ul>

구 분	내 용
	(3) 남북관계상황의 특수여건으로 인하여 「오산으로 인한 남북전쟁」발발 가능성 상존
나. 대남혁명전략수행의 여건조성 (통일전략)	(1) 대남혁명을 규정한 노동동규약 전문 (2) 평화통일 5개항 ( 73.6.23 ) ○ . 대민족회의 ○ . 고려연방제
다. 국제정세요청의 반영 (전략환경)	(1) 북한체제는 명목상 「자주로선」을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중·소의존적(군사적, 경제적)임으로 동서화해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음.

가. 북한측의 남북대화중단선언을 일시적 전략, 전술차원에 불과하며

나. 체제유지(전쟁의 방지)와 대남혁명 전략수행(통일전략)의 기본적수요에 따라 남북대화의 재개는 불가피 함.

### 3. 남북조절위원회의 성격과 기능

#### 가. 남북한간에 명시적으로 합의를 본 남북조절위원회의 임무 (기능)

구 분	내 용
<p>(1) 원칙적합의 ( 7.4.공동 성명 )</p>	<p>(1) 남북간에 합의된 원칙에 의한 조국 통일의 실현을 위한 노력</p> <p>(2) 남북간에 무력충돌을 방지하며 긴장 상태를 완화하는데 필요한 조치의 강구</p> <p>(3) 남북간의 이해를 증진하고 평화통일 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다방면 적인 제반교류의 실시</p> <p>(4) 남북적십자 회담의 지원</p> <p>(5) 서울과 평양간의 직통전화를 통한 돌발과 군사사고의 방지 및 기타 긴급을 요하는 문제의 해결</p>

구 분	내 용
<p>(2) 구체적합의 ( 73.11.4. 제 2차회의 합의 )</p>	<p>(1) 합의된 조국통일 원칙에 기초하여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 는 문제를 협의 결정 실행보장</p> <p>(2) 남북의 정당, 사회단체 및 개별적 인사들 사이의 광범한 정치적 교 류를 실현하는 문제를 협의, 결정 실행보장</p> <p>(3) 남북간의 경제, 문화, 사회적 교류와 힘을 합쳐 같이 사업하는 등의 문 제를 협의, 결정, 실행보장</p> <p>(4) 남북간의 긴장상태를 완화하며 군사 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대치 상태를 해소하는 문제를 협의, 결정 실행보장</p> <p>(5) 대외활동에서 남북이 공동보조를 취 하며 단일민족으로서 민족적증지를 선양하는 문제를 협의, 결정, 실행보장</p>



○ . 이상 남북조절위원회의 임무(기능)는 표면적으로는 명사적합을 보았으나 실질적으로는 명목적합의에 불과하며 남북한은 대화과정에서 이 합의 내용을 자기측의 전략 전개에 유리하게 이용할 것임 .

나 . 남북조절위원회의 임무(기능)에 관한 남북한의 전략적 입장

(1) 한국의 입장

내 용	비 고
<p>(가) 남북조절위원회를 남북간의 협의 기구로 평가 남북간 현안문제의 점진적 실질적 해결기도</p> <p>(나) 남북조절위원회를 통하여 남북간의 긴장완화와 평화적관계의 정착 기도</p>	<p>○ . 6.23 평화통일 외교정책선언의 취지</p>



(2) 북한측의 입장

항 목	내 용
<p>(가) 남북조절위원회 회를 남북관계 개선의 협의기 구로 평가 (체제유지적 입장)</p>	<p>(가) 평화협정체결에 의한 남북한 긴장 상태의 해소  (나) 평화협정체결은 「합작」전략의 요 인이 있으나 기본적으로 「체제유 지」의 요인으로 작용</p>
<p>(나) 남북조절위원 회를 남북한 「합작」을 실 현하는 과정으 로 평가 (대남혁명적 입장)</p>	<p>(가) 남북조절위원회는 북한측이 1960. 8.15 이래 주장해온 남북연방제안 과 기본적으로 유사성내포  (1) 기구면 ○ . 남북연방제 - 남북간 정부대표로 최고 민족회의 구성 ○ . 남북조절위원회 정부간 비공식 기구 따라서 구성원을 정부 급대표로 인상하면 남북연방 제와 남북조절위원회는 기구 면에서 극히 유사</p>

항 목	내 용
	<p>(2) 기능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 남북연방제 - 남북한의 「합작」 구조</li> <li>○ . 남북조절위원회 - 남북한의 「대결」 구조</li> </ul> <p>따라서 「대결」에서 「대화」 구조로 변질시키면 남북연방제와 남북조절위원회는 기능면에서 극히 유사</p> <p>(나) 북한측은 남북한관계를 대남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합작」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바 경제교류에 관한 남북한의 관념은 기본적으로 상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 한국 - 등가교환의 원칙이 지배하는 교역</li> <li>○ . 북한 - 교류는 수단이며 주목적은 「합작」으로 북한측은 철광석 공동개발, 어장개발, 관개공사의 북한협력등 정치목적을 위한 제의를 하고 있음.</li> </ul>

소 결 론

- (가) 북한측은 남북조절위원회를 체제유지의 수단으로서 보다는 대남혁명의 수단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 (나) 따라서 남북조절위원회가 「합작」의 기능으로 유도되지 않음으로 남북대화기구의 변질을 시도하고 있음.
- (다) 북한측은 남북조절위원회에 남북정당, 사회단체대표 및 각계 각층인사를 참여시키거나
- (라) 아니면 이들을 구성원으로 비당국간회의를 별도로 개최하자고 주장하고 있음.
- (마) 이것은 남북조절위원회를 「합작」기구로 발전시켜 궁극적으로 남북연방제 및 대남적화통일을 실현시키려는 전략에 불과함.

(3) 우리의 대응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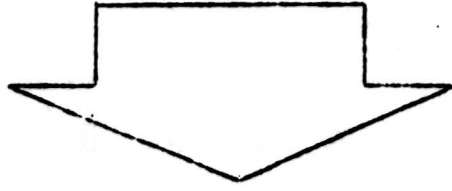
- . 이상의 북한측 전략을 고려할 때
- . 남북대화가 재개되면 남북조절위원회의 기능을 체제유지  
형으로 유도하여야 함.

(가) 남북간의 평화정착문제를 우선적과제로 취급하고  
(남북한 일반관계설정등)

(나) 「합작」의 성격이 아닌 「교역」으로 경제교류문제를  
취급하며 상호 체제안전범위내에서 사회, 문화  
교류를 실현하고

(다) 대외적으로는 남북이 동일민족이라는 점을 표시하는  
것 이상의 협조관계를 실현시키지 않음이 타당  
(단, 국제경기에서 단일팀구성 정도는 무방)





- (1) 남북한의 현안문제타결을 위한 구체적 협의는 분과위원회에서 이루어질것임.
- (2) 따라서 남북대화가 재개되면 분과위원회 설치문제가 시급히 거론될것임.

나. 남북간에 명시적으로 합의를 본 분과위원회의 설치방안

○ 1973. 11. 4 공동위원장 제 2차회의 합의

- (1) 남북조절위원회안에 정치, 군사, 외교, 경제, 문화분과위원회 설치
- (2) 각분과위원회는 남북조절위원회사업이 진척 되는데 따라 설치

다. 분과위원회 설치에 관한 남북한의 전략적 입장

○ 분과위원회 설치에 관한 남북한의 대립표면화

(73.3.14 ~ 16, 남북조절위원회 제 2차회의)

구 분	내 용	비 고
(1) 한국 의 입장	○ 경제분과 및 사회, 문화 분과위원회를 우선 설치	○ 남북한의 경제, 사회, 문화교류 우선 실시
(2) 북한 측의 입장	○ 5개 분과위원회 동시 구성	○ 남북간 군사문제 의 우선 해결 (군 사 5개항)  (1) 남북간의 무력 증강 및 군비 경쟁의 중지  (2) 남북의 병력을 각각 10만으로 감축  (3) 주한외국군 철수  (4) 남북은 무기 및 무장을 외 국으로 부터 반입금지  (5) 이상을 내용으 로 하여 남북 간 평화협정 체결

예상 타결성

대 책	타 결 정	평 가
○ 우리측의 대용전략 (분과위 원회설치 타결가능 성)	○ 5개분과위원회의 동시 설치타결	○ 분과위원회의 동시 설치는 사업의 동 시 개시할 의미하 지 않고 별도의 합의에 따라 사업 실시의 선후가 결 정될 것임으로 분 과위원회동시설치는 무방

라. 정치분과위원회의 지위와 사업

(1) 남북간의 명시적으로 합의를 본 정치분과위원회의 지위와 사업

(가) 합의된 조국통일원칙에 기초하여 나라의 자주적,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는 문제들 협의, 결정, 실행보장

(나) 남북의 정당, 사회단체 및 개인적 인사들 사이의 광범한 정치적교류를 실현하는 문제들 협의, 결정, 실행보장



(2) 남북간의 명시적합의에 기초하여 정치분과위원회에서 거론될  
구체적 사업 (안건)

사업 대상	문제 상황
(1) 통일문제의 해결	<p>(1)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는 문제 (북한측의 대민족회의 소집 주장근거)</p> <p>(2) 남북한은 합의된 통일원칙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에 대하여 상호해석을 달리하고 있는바, 견해 접근문제 계속논쟁</p> <p>(3) 통일원칙의 구현방법문제 계속논쟁</p>
(2) 남북관계의 개선문제	<p>(1) 남북상호간의 관계에서 안정지향적 (체제유지)이나 통일지향적이나 문제로 대결예상</p> <p>한국 - ○ 궁극적목적 - 통일 ○ 당면정책 - 한반도의 평화정착</p> <p>북한 - ○ 궁극적목적 - 적화통일 ○ 당면정책 - 남북한 「합작」 실현</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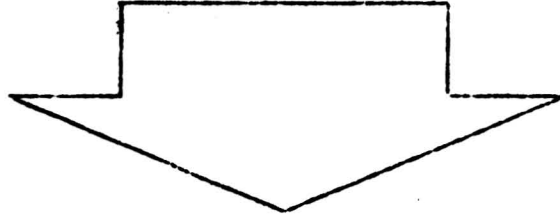
사업대상	문제상황
(3) 남북간 정치 대화의 형태문제	(3) 남북대화에 정당, 사회단체 및 각계 각층의 인사들 참여시킬 경우 ○ 북한 - 노동당독재 및 김일성유일사상으로, 북한국내 정치에 무영향. ○ 한국 - 복수정당제이므로, 한국국내 정치에 직접영향

마. 정치분과위원회의 설치시기 판단

(1) 남북대화재개조건제시 ( 73.8.28 김영주 성명 )

재개조건	우리의 평가	비고
(가) 남북조절위원회 이후 락서울측 공동위원장을 을 교체하고 동위원 회 서울측 위원중에 서 중앙정보부 출신 제거	○ 한국 ( 이후락 ) 대화 재개조건 (가) 북한이 대화중 단선언철회 (나) 남북상호주의에 입각, 위원교체 새로조절위 구 성	타결가능

재 개 조 건	우 리 의 평 가	비 고
<p>(나) 조국의 평화통일을 진정으로 원하는 인사로 서울측위원을 구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간의「합작」에 긍정적이고</li> <li>○ 조국분단을 고정화시키는데 반대하며</li> <li>○ 한국에서의 「민주인사」를 탄압하지 않아야 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23 선언과 위배</li> </ul>	<p>타결곤란</p>
<p>(다) 한국에서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시위등 「인민들의 민주주의적 자유」와 정당, 사회단체들의 활동자유를 보장하며, 체포, 투옥된 「애국가」석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의 철폐요구</li> </ul>	<p>타결곤란</p>



북한측은 남북대화(남북조절위원회)재개에 강경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1) 남북대화의 가치평가, (2) 국내외정세의 여건에서 보다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대화 재개 예상

(2) 북한측의 남북대화평가

구 분	내 용
(가) 남북대화이후 한국의 체제안정면	(가) 10월유신으로 체제공고화 단 체제공고화의 반작용으로 정부와 국민간의 모순증대 가능성 기대 (나) 한·미군사동맹관계와 국군현대화 계획의 추진 저지 실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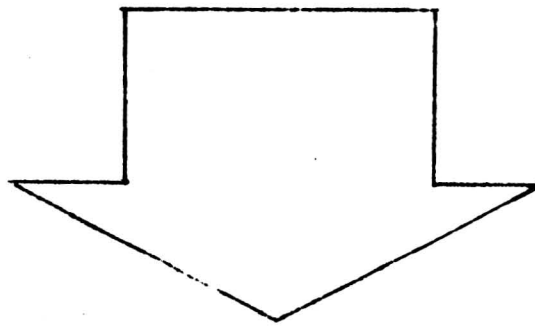
북한측은 남북대화(남북조절위원회)재개에 강경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1) 남북대화의 가치평가, (2) 국내외정세의 여건에서 보다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대화 재개 예상

(2) 북한측의 남북대화평가

구 분	내 용
(가) 남북대화이후 한국의 체제안정 면	(가) 10월유신으로 체제공고화 단 체제공고화의 반작용으로 정부 와 국민간의 모순증대 가능성 기대 (나) 한·미군사동맹관계와 국군현대화 계획의 추진 저지 실패

구 분	내 용
<p>(나) 남북간의 「합작」 추진면</p>	<p>(가) 우리의 원칙적입장(「합작」, 남북연방제 반대)과 대북대결의 의지가 확고함을 인식하고 북한은 대화중단선언으로 남북대화의 가치를 재검토.</p> <p>(나) 우리측이 남북간 사회문화교류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북한만이 통일을 추구하고 있다는 인상불식.</p> <p>(다) 남북간 경제, 사회, 문화교류를 전제로 북한은 신헌법을 제정하여(73.12) 경제발전의 효율적 추진기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인민위원회(최고정책결정 및 감독기관)위원 25명중 8~10명의 경제통을 기용하여 경제정책보강</li> <li>○ 종래 노동당정치위원 11명 및 후보위원 5명중 경제전문가는 후보위원 가운데 2~3명에 불과.</li> </ul>

구 분	내 용
(다) 「국제혁명역량」 면	(가) 6.23선언에 의한 우리측의 대중· 소관계개선 희망신호로 「국제혁 명역량」의 약화가능성 배태



현재까지의 남북대화는 북한측에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으나 (1) 체제유지, (2) 대남혁명전략의 기본적 수요가 있는 한 북한측은 상황변경에 따라 남북대화재개에 응해 올것임.

(3) 북한측이 남북대화(정치분과위원회설치)에 응할 상황추정

- ① 남북당국간의 대화가 북한의 체제안정에 위협이 되지 않고 동시에 긴장완화에 기여한다고 확신할 때
- ② 이른바 「남조선 혁명」을 통한 적화통일의 달성가망이 요원해졌다고 보는 동시에 경제발전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남북간의 평화적 경쟁을 통한 통일문제에서의 주도권쟁탈이 불가피하다고 확신할 때
- ③ 6.23선언이 공산국가들 포함하여 국제적으로 광범한 지지를 받고 그것이 북한의 어떠한 정책으로서도 움직일수 없을 만큼 확고해졌다고 인식하였을때
- ④ 남북당국간 대화의 재개로 인하여 북한지도층 내부에 심각한 의견대립이 야기하지 않는다고 확신할 때



## 5. 정치분과위원회설치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 가. 구성 문제

구 분	문제점 및 대책
(1) 정치분과위원회의 형태	<p>(1) 북한측은 남북조절위 구성에 관한 토의과정에서 부위원장과 간사위원 및 위원은 현직장, 차관으로 하자고 주장한 점으로 보아 정치위원회를 정부간의 공식기구화기도예상</p> <p>(2) 현단계에서는 정치분과위원회를 정부간의 비공식기구로 관철하여 북한측의 「합작」전술을 분쇄하여야 함.</p> <p>(3) 그러나 6.23선언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남북대화의 진전에 따라 정부간 공식기구로 하여야 함.</p>
(2) 정치분과위원회의 인원선정문제	<p>(1) 북한측의 특정인물배척전략을 강력히 분쇄하여야 함.</p>

구 분	문제점 및 대책
<p>(3) 정당, 사회단체 대표 및 기타 비당국인사의 참여문제</p>	<p>(1) 조절위원회의 성격이 변질되지 않는한 정치분과위원회에 정당, 사회단체등 비당국인사의 참여 불가</p> <p>(2) 당국과 비당국 인사의 혼성팀으로 하자는 북한측 주장은 일선에서 타협하여도 무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공적 입장에서 대내 단결초래</li> <li>○ 통일혁명당의 참여는 단호히 거부</li> <li>○ 정당, 사회단체의 선정은 상호 임의로 선정하고 타방의 간섭배제</li> </ul>

나. 해 결 과 제

구 분	문제점 및 대책
<p>(1) 한국반공체제의 폐기주장</p>	<p>(1) 반공법, 국가보안법의 폐기주장은 이른바 「남조선 혁명기반조성」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철저히 반대</p> <p>○ 북한은 현실적으로 정치활동의 자유가 제약되고 있음.</p> <p>(2) 서독의 기본법과 같이 통일과 남북관계개선의 특정목적을 위해 남북인사의 접촉, 왕래에는 한국의 기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예외조항을 일반관계설정 혹은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부칙에 삽입하는 것도 고려가능</p>
<p>(2) 주한외국군 철수 및 한미, 한일협력관계의 단절요구</p>	<p>(1) 안보상황 불간섭원칙고수</p>